

## 보다 안전한 미래 한국시설안전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02-567-1337  
[www.assi.or.kr](http://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mailto: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2 - 143호

시행일자 2022. 4. 20.

수 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참 조

제 목 「국도35호선 호포고가교 등 2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제연설비 정밀점검 기술  
용역」 정정 공고 요청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람	
리	과								
담	당								
자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무소에서 2022년 4월 18일 입찰 공고한 「국도35호선 호포고가교 등 2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제연설비 정밀점검 기술용역」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성능평가 외에 터널시설물 제연설비 정밀점검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은 제연설비 정밀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 관계를 맺어야만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시설물 제연설비 정밀점검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3~4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업체와 공동수급 관계를 맺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은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제5조 4항의 7호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8호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과 기계·설비분야는 엄연히 업역이 다르고 각 관련법령에 의한 1개의 등록만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4. 따라서 우리 협회에 소속된 다수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터널시설물 제연설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과업 내용에서 제외하고 용역을 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한국시설안전협회

